

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(제4조제1항 관련)

시설의 종류	설치기준	면적기준
1. 보통교실	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7조에 따른 학급 수에 상당하는 수가 되도록 설치한다.	각 교실마다 50제곱미터(유치부만을 설치·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25제곱미터) 이상이어야 한다.
2. 특별교실 음악실, 미술실, 과학실, 가사실 및 치료지원실 등	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한다.	각 교실마다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3. 시청각교실	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한다.	각 교실마다 99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4. 도서실	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며, 보통교실과 겸용하는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총 열람 좌석은 20석 이상이어야 한다.	
5. 상담실(심리검사실을 포함한다)	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한다.	각 실마다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6. 직업교육실	중학교 과정 이상의 학교에만 설치하며, 학교당 2실 이상 설치한다.	각 교육실마다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7. 관리용 시설 교장실, 교무실(서무실 및 행정실을 포함한다), 숙직실 및 창고 등	학교 실정에 따라 설치한다.	학교의 규모에 따라 알맞은 면적으로 설치한다.

8. 놀이실	유치부를 설치·운영하는 학교에만 설치한다. 다만, 학생의 놀이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	66제곱미터 이상이 여야 한다.
9. 보건실	1실 이상 설치한다.	

비고: 위 시설 외에 강당·체육관·점자인쇄실·특별활동실·교수준비실 및 자료보관실 등 교육 관련 시설을 둘 수 있다.